

- 2024년 9월 중 -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 안내문

추진목표

- ◇ '선(先) 지도, 후(後) 단속'을 통해 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 및 불법어업 예방, 투명·공정한 행정 구현

1 육·해상 지도·점검 계획

□ 접경수역 출어선 안전관리 및 외국EEZ 침범조업 관리 강화

- (EEZ) 외국 EEZ* 경계선 근접조업 어선(서남구저인망·자망 등)에 대한 지도·홍보를 강화하고, EEZ 침범 조업 위험 사전차단

* 한·일 중간수역(89,91,358해구), 남해 EEZ(100,106해구)

- (현황) 남해 EEZ(106해구)인근 '눈볼대' 어장 형성으로 서남구저인망·자망어선 등 EEZ 경계선 침범어선 다수 발생 중

* 고의 침범조업이 의심되는 어선은 강력 지도·단속 실시

- (항해장비) ①GPS 위치오차 등을 고려하여 EEZ 경계선과 안전거리 유지, ②동경측지계와 세계측지계의 혼용사용 금지

- 한·일 중간수역에서 연료절감 등을 위해 EEZ 횡단어선 증가, 횡단 시 어구격납 철저, 지도선 간 통신채널 구축하여 日지도선에 나포 방지

□ 제1·2구 잠수기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 이행현황 점검

- 사업 참여 잠수기 TAC 배정량 준수, 어업장비(CCTV·위치발신장치) 전자어획보고, 별도조건(흡입기 마력제한 등) 준수여부 현장 점검

- 특히, 「연근해발전법」 시행을 대비하여, 어획증명관리시스템(앱) 설치·가입 지원 및 사용방법 중점 교육·홍보

* (점검일정) 9.4 ~9.5(2일간) / (점검지역) 거제(장목항), 진해(속천항)

□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관리제도 지도·단속 강화**

○ (어구실명제) 대상업종*의 경우 어구 설치 시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의 성명, 연락처 등의 정보**를 어구에 표시

* 연안개량안강망·근해안강망·실뱀장어안강망, 연·근해 자망 및 통발어업

** ①소유자의 성명·연락처 ②어선 명칭·어선번호 ③사용되는 어구의 일련번호

○ (생산·판매 신고제) 어구·기자재의 생산·판매·수입업자는 관할 지자체 신고, 생산·판매한 어구의 종류·구매·수량 등의 기록을 3년간 보존

* (대상자) 선구점을 포함한 생산·판매·수입업자 전부

○ (어구보증금제) 선구점·어업인에 통발어구 판매 시 보증금액 포함 판매, 표식 부착, 판매정보 제공 등 어구 생산·판매업자의 의무 준수

* (대상자) 통발어구 생산·수입·판매업자(일반 선구점 제외)

<어구관리제도 위반유형별 벌칙사항>

구분	위반유형	벌칙사항
어구실명제	어구실명제 기재사항 미이행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생산·판매 신고제	생산·판매업 미신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생산·판매기록 작성·보존 의무 미이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어구보증금제	판매정보 미제공, 환급문구 미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증금관리센터에 보증금 미이관	

□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 실태조사**

○ 위판 시 쿼터량 소진관리, 참다랑어 이외 어획물(기타 다랑어)에 대한 처리 현황 등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준수 여부

<참다랑어 고시 주요내용>

- ▶ (쿼터관리) 업종별 배정받은 어획한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포획 및 위판금지 명령 등 조치가 이행될 수 있으므로 단체별 어획량 관리 철저
- ▶ (어획보고) 참다랑어를 포획 또는 폐기·방류한 경우, 24시간 이내 수협에 보고하여야 하고, 어획량을 축소·확대하는 등 거짓보고 금지
- ▶ (위탁판매) 참다랑어 포획한 자는 수협에 위탁판매 하여야하며, 위탁판매가 완료되기 전 냉동창고 등 다른 장소 또는 다른 어선으로 이적 금지

2 어선법

□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 설치 및 상시작동 지도·단속

- (상시작동) D-MF/HF 의무설치기한 도래*(~3.31.)에 따라 장비 미설치·미작동** 행위 중점 지도·점검, 미작동 정환 발견 즉시 단속

* (설치대상) 기선권현망·잠수기 어업을 제외한 모든 근해업종

** (미설치) 어선법 제21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작동)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장비를 고의로 미작동하거나, 어선 상시전원이 아닌 배터리모드로 동작하는 등 위치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는 어선 집중점검

- (고장신고)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사실 미신고, 고장신고 이후 수리 등의 조치 미이행 시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 시 지체없이 관할 해경파출소(해상-어선안전조업국 또는 경비함정)에 신고 후 15일 이내에 수리 등의 조치 필요

3 어선안전조업법

□ 주요 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출입항 신고 이행 철저, 특정해역·조업자제해역 출어선은 어선출입항 신고서를 신고기관에 제출, 선박 보관

- 승선원 명부 등 어선출입항신고서의 내용에 변동(인원 변경·추가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관할 해경파출소에 신고

- 「법」 제12조에 따라 특정해역 출어선(1일 3회), 조업자제해역 출어선(1일 2회), 일반해역 출어선(1일 1회) 위치통지 의무 준수

- 특히, 기상특보(태풍·풍랑·폭풍) 및 기상 예비특보 발효 시 지도선, 해경함정의 이동 및 대피명령 준수, 구명조끼 착용의무 착용

* 1일 1~3회 위치보고+풍랑특보(매 12시간), 태풍특보 시 추가 위치보고(매 4시간)

4

면세유

□ 면세유류 사후관리 점검계획

- (지역대상) 강원 / 관리기관, 선박 등 공급대상 사용자
- (점검사항) 면세유류 배정 시 공급요건* 충족 여부, 허가말소·행정처분 기간 중 공급내역 확인, 어업 외 용도로 면세유 사용 여부 등

* (공급요건) 연간 조업일수 60일 ↑ 또는 수산물 판매실적 120만 ↑

- 면세유류 출고 관련 서류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 선박·시설 등의 실제 사용 여부, 엔진 등 주요 기기 변동신고 현황 등 중점 점검

5

수산관계법령 주요 제·개정 사항

□ 총허용어획량(TAC) 운영 관리 지침 개정

- (주요내용) ①전배 유형 세분화*(1→3개), ②다년제 TAC 적용을 위한 이월·당겨쓰기 물량횟수 및 절차** 규정, ③매주 소진율 70% 이상 어선 초과어획 주의 통보(한국수산자원공단→해당어선)

* 전배 어획량의 다음어기 실적 인정 여부에 따라 세분화(대여, 부분이전, 완전이전)

** (이월) 당해연도 배분량의 20% 이내로 하되, 사용횟수는 제한 없음

(당겨쓰기) 당해연도 배분량의 10% 이내로 하되, 다년제 TAC 적용기간 중 1회로 제한

□ 어선검사증서 등 전자적 형태 발급 실시

- (주요내용) 종이 형태로 발급·관리·사용하던 어선검사증서* 등을 '24년 6월 21일부터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사용·관리 가능

* 어선검사증서, 어선특별검사증서, 임시항행검사증서, 건조검사증서, 예비검사증서, 별도건조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제조·정비)확인증, 제한하중 등 확인증 총 9종

-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 내려받기 가능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함께해요! 어구보증금제도

어구보증금제도란?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지정된 반환장소로 되가져 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시행 대상

어구·부표(어구 등)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보증금대상사업자)이며, 어구 등의 출고 또는 수입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어구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어구보증금의 부과 대상(※ 수산업법 제81조)

어구보증금제도는 어구·부표가 대상이며 제도가 시행되는 '24년부터는 통발 어구에 우선 적용되며, 점차 부표, 자망 등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어구보증금액

'24년에 제도 시행 시 우선 적용되는 통발어구(스프링, 원형, 반구형, 사각, 붉은대개)에 대해 종류별로 1,000원~3,000원의 보증금액이 포함됩니다.



✓ 시행 일자

2024년 1월 12일

☎ 문의처

어구보증금관리센터 대표번호 051-718-2452
어구보증금지급관리시스템 www.fdp.or.kr





주요 어구 표식 지침

1
스프링이 설치된 장구형의 통발 3000원

2
원통형의 통발 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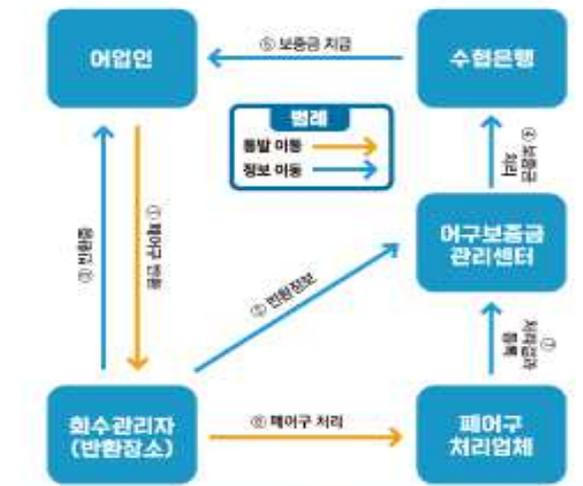
3
원통대형 (반구형)의 통발 2000원

4
사각형 통발 3000원

5
원통대형 (대개쉬 - 뽕은대개쉬) 통발 3000원



폐어구 회수 및 보증금 환급 프로세스



수행 내용	
어업인	① 보증금 표식 부착 폐어구(통발) 반환 ② 보증금 부과 폐어구 반환증 수령 ③ 보증금 입금 확인
회수관리자 (반환장소)	① 보증금 표식 부착 폐어구(통발) 반환 확인 ② 폐어구 반환정보 등록 ③ 보증금 부과 폐어구 반환증 발급 ④ 집하장 내 폐어구 처리 요청
어구보증금 관리센터 및 수협은행	⑤ 폐어구 반환정보 확인 ④~⑥ 보증금 처리 및 지급, 결과등록 ⑦ 폐어구 처리량 및 재할용량 확인
폐어구 처리업체	⑧ 집하장 내 폐어구 처리 ⑦ 폐어구 처리량 및 재할용량 등록



폐어구 반환 장소

전국 181개소 반환장소

• **숫자** : 각 지역별 폐어구 반환장소 수

점검대상	점검내용	제재사항
관리기관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카드 등 발급	가산세* 징수 *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②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면세유류카드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어민 외의 자에게 발급	가산세* 징수 * 감면세액의 100분의 20
어업인	①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과 어업경영 사실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취득·양도 또는 사망·이어(離漁)등으로 신고 내용에 변동 사항 발생 시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변동내용 미신고	2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
	②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와 그 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2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
	③ 어업기계 및 선박의 사용실적, 어업기계 및 어업용 시설의 생산실적을 최종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	1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
	④ 어업용 외 용도 사용(자동차, 가정용 보일러, 무허가 어선 및 시설 등)으로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사유 발생 시	2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
	※ 상기 4가지의 사유로 면세유 사용 불가 시, 그 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 포함	
	⑤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와 그 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감면세액 + 가산세* 추징 *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 그 외, 면세유 사용 불가 기간 안내 ◆ - 어업 등에 대한 제한(취소, 감척 등) 등으로 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기간 - 「수산업법」 따라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 과징금(감경하거나 가중하기 전의 금액 기준)에 상응하는 정지처분 기간	
석유판매업자	①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 신청	감면세액 추징
	②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공제세액 신청	감면세액 + 가산세* 추징 *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 감면세액 추징 사유 발생 시, 관리기관 중앙회는 면세유 판매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 면세유 판매불가(조특법 제106조의2 제13항)		